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고찰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김 석 철*
Suk-Chul Kim

〈목 차〉

- I. 서 론
- II.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탄생 배경과 특징
- III.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고찰
- IV.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 V. 요약 및 결론

주제어 : 북한대외경제중재법, 실효성, 남북경제협력, 중재판정문공인, 사법공조.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는 1992년 대우의 남포공단합영 사업부터 시작하였으며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의하여 1995년부터 위탁가공무역에서 시작하여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¹⁾. 동년에 반출 미화 64,436천 달러 반입 미화 222,855천 달러를 거래하였다. 이후 2002년 10월 금강산 관광사업, 2002년 11월 개성공단사업으로 2003년에는 반출 미화 434,965천 달러 반입 미화 289,252천 달러로 거래가 급증하였다. 2005년에는 북한이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도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에 반출이 미화 830,200천 달러이고 반입이 미화 519,539달러로 전체거래가 미화 1,349,739천 달러로 크게 증대하였다²⁾.

통일부가 2007년 11월 말까지 기준³⁾으로 한 남북 거래 분석에 의하면, 전체거래실적은 미화 1,636,897천 달러로서 2006년 동기간의 미화1,263,833천 달러에 비해 29.5% 증가하였다. 반입 물량은 미화 693,826천 달러로 2006년 동기간의 475,829천 달러에서 45.8%가 증가하였고 반출물량은 미화 943,071천 달러로 작년 동기 미화 788,004천 달러에 비해 19.7%가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는 미화 1,291,138천 달러로서 작년 동기 미화 848,381천 달러 보다 52.5%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상업적 거래는 16.8%가 감소하였다. 교역구조별로는 일반교역 25.3%, 개성공단교역 24%, 대북지원 19.1%, 위탁가공교역 18.5%, 금강산 관광 6.4%, 경공업협력 5.2%로 나타났다. 일반교역은 미화 414,127천 달러로 작년 동기 275,506천 달러에 비해 50.3%나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교역 중에는 광산물 교역이 105%, 철강금속이 7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림수산물도 28%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은 미화 392,290천 달러로 작년 동기 미화 266,057천 달러보다 47.4%나 증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은 미화 302,250천 달러로 작년 동기 236,813달러보다 27.6%증가하였고, 금강산 관광 사업은 미화 105,060천 달러로 작년 동기 54,720달러에 비해 92% 상승하였으며, 대북지원액은 미화 312,455천 달러로 작년 동기 미화 413,052천 달러에 비해 24.4%로 감소하였다. 2006년 핵실험으로 인해 2006년 금강산 관광객 감소와 2007년 대북지원감소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거래 업자 279개 회사를 상대로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대북교역 애로사항조

1) 신군재, 이주원,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 2호, 한국중재학회, 2007,7, p.102.
 2) 한국무역협회, 대북무역 통계자료, 2007.
 3) KDI, 「북한경제리뷰」, 2008,1, p.18.

사⁴⁾에서는 클레임 해결수단이 없다는 응답 회사가 44개 회사로 가장 많았으며, 2위가 물류비가 비싸다가 38개 회사, 3위는 품질불량 37개 회사, 공동 4위는 통행과 통신애로가 각각 31개 회사, 공동 6위는 계약불이행과 복측의 일방적 단가인상이 각각 23개 회사 등의 순위다. 물류비과다와 통행, 통신애로를 빼고는 클레임 해결수단이 없는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일방적 단가 인상 등 클레임 관련 애로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핵문제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침체가 있기도 하였으나 남북한 간의 교역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역클레임을 해결 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⁵⁾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보다 활발한 경제 거래를 통해 정치, 사회, 문화 교류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투자 등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중재제도의 확립이 최선책이다.

이에 남과 북은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2003년 발효되었으며, 2005년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어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이미 국제 수준의 중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아직 국제 중재는 법제정과 기관설립 등 아직 초기 수준에 있어 북한 중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중재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북한 대외 중재의 관리법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북한 중재의 실효성을 구축을 통하여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과 관련한 선행 논문은 박정원의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관한 고찰”이 있다⁶⁾. 본 논문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 설명에 대한 논문이다. 신군재·이주원의 논문은 남북한 및 중국의 중재제도 비교연구로서 남북한 중재제도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방식을 취하고 있다.⁷⁾ 최석범은 북한의 중재법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⁸⁾ 그리고 김석철은 동북아 주

4) 한국무역협회 “06년 남북교역 전망 및 애로 조사”, 2006,2, p.18.

5) 김연철, “북한 경제 정책 변화의 의미와 전망” 「정세와 정책」 제74호, 세종연구소, 2002,9

6)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북한법 연구」 제4권, 북한법연구회 2001.

7) 신군재·이주원 전계 논문.

요국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의 중재법을 비교 연구하였다.⁹⁾ 지금까지의 논문은 북한의 중재제도에 대한 특징위주로 고찰되어 남북한교역과 관련된 중재법인 대외경제중재법이 교역상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동법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의 실효성 제고가 그 목적으로 선행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탄생 배경으로서 북한 중재의 기본법인 북한 중재법의 제정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북한 경제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중재합의, 중재인, 중재심리, 증거조사, 중재판정과 집행, 중재판정 취소의 소 등 대외경제중재법상의 문제점,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적 환경상의 문제점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대외경제중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끝으로 요약 및 결론을 맺는 방법으로 논문을 전개하였다.

II.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탄생 배경과 특징

1. 탄생 배경

북한 최초의 중재관련법은 1948년 2월 29일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결정 제 120호로 제정된 “북조선인민위원회 계약중재원규정”이다. 본 규정은 구소련이 국영기업소나 공공단체간의 계약 제도를 확립하여 소련의 계획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설치한 계약 중재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계약 중재원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산하의 북조선 계약 중재원과 도인민위원회 산하의 도계약중재원으로 나누어져 설치 운영되었다.¹⁰⁾ 그 후 1952년 11월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를 제정하였다. 국가중재원은 내각 직속으로 두고 도중재원은 기존의 도인민위원회에 산하로부터 독립시켜 국가중재원에 직속시킴으로서 중앙의 국가중재원이 지방의 도중재원을 통제토록 국가중재원의 기능을 확대시킴으로서 중

8) 최석범, “북한중재법의 주요특징과 시사점”,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12. pp.57-79

9) 김석철,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12, pp.31-56.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통일 사법 정책자료 95-IV, 1995, pp.42-43.

양 계획경제 실현을 강화하였다.¹¹⁾ 1958년 5월에는 상업성의 성중재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성중재원이 상급기관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고, 국가중재원과 연계 부족 등으로 1966년 8월 성중재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계획경제 실현을 위한 중앙권력 집중을 위해 중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 직속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직속의 독립 국가 중재원으로 격상시켰다.¹²⁾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5년 3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3호로 오늘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이 탄생되었다.

동법은 북한 내의 국가 기관 간 즉 북한 국가가 독립적인 경비 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중재 당사자가 되며,¹³⁾ 인민 계획 경제 실행을 위하여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행위의 예방,¹⁴⁾ 위반사항조사 및 지도감독, 문책¹⁵⁾등을 행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법¹⁶⁾으로서 개인 및 사기업 간의 거래나 국제간의 거래분쟁 등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은 개혁·개방정책의 채택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과정에서의 분쟁도 국제무역중재절차로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국제무역중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또한,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대외무역관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¹⁸⁾ 이에 따라 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875호로 대외경제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제도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특징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동법 제 1조에서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 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를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동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대외경제분쟁해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외투자자등 대외경제주체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2조에서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조선해사중재위원회를 두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서비스 관련 분쟁을 관장하며,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의 중재는 중재법에 의한 국내중심의 국가중재와 대외경제중재법에

11) 리황, 「중재법학」, 김일성 종합 대학 출판사, 1991, p.34.

12) 전계서, p.37.

13) 북한 중재법 제8조.

14) 북한 중재법 제5조.

15) 북한 중재법 제4조.

16) 북한 중재법 제6조.

17) 박정원, 전개논문, p.66.

18) 최석범, 전개논문, p.63.

19) 북한 중재법 제 2조.

의한 대외경제중재제도로 2원화되어 있다. 북한의 국가중재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재판관할과 마찬가지로 대상(對象)관할, 지역(地域)관할, 연관(聯關)관할로 나눌 수 있다. 그와 같은 관할 개념은 국가중재기관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검열·감독 제기 등 행정업무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²⁰⁾ 국가중재는 국내중재로서 계획경제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공익 기업소 및 단체의 목표실행을 위하여 독립된 국가기관의 중재기관이 이들을 지도 감독, 책임 규명 등을 하는 제도로서, 사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민간인인 중재인의 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국 등 일반 중재제도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중재법은 해외투자자등 중재 일방이 외국관련 기업이거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의 일반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 기업이 아닌 국가 혹은 공공기업이 그 당사자가 된다. 또한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신분도 민간기관이나 신분이 아닌 국가기관이며 국가 공무원이며, 대외경제 중재법도 한국처럼 국제화되어 있지 못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치, 사회적 면에서도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외경제중재의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Ⅲ.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고찰

1. 북한 경제시스템상의 문제점

(1) 북한 중재의 대상은 국가 소유

북한 내의 중재대상은 개인이 임의 처분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닌 국가 및 공익 기업이나 단체의 공공재산으로 관리되며 국가소유다. 거래의 종류는 대외경제중재법에서 무역, 투자, 서비스,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과 같은 분쟁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령 섬유제품의 무역이나 투자 등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배상 능력이 없을 때는 토지나 건물 등에 권리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경제 체제의 특성상 개인소유가 불가능 하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재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중재당사자는 국가 혹은 공익기업이나 공공단체²¹⁾

북한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 사기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계획경제하의

20)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p.38.

21) 북한 중재법 제4조

국가 혹은 공익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경제활동의 주체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사인간의 관계인데 비하여 북한은 당사자가 국가 및 공익기업이나 단체이며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 소송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가 당사자가 된다면 공정성 보장이 염려가 된다.

2. 대외경제중재법상의 중재합의 관련 문제점

(1) 일부 분쟁 중재합의 규정 미비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이나 분쟁발생 후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을 중재합의로 인정하고 있다. 사전, 사후 중재 합의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²²⁾ 그러나 일부 중재합의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일부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해 다툼의 여지도 있다.

(2) 서면중재합의 방식에 대한 구체성 미흡

북한 대외경제 중재법에서 서면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이나 분쟁 발생 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²³⁾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의 중재법에서는 북한과 같이 계약 중 중재조항이나 독립된 중재합의 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② 서신, 전보, 전신 및 모사 전송 기타 통신수단으로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③ 일방이 당사자 간 교환 문서로 중재합의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중재조항을 포함한 다른 서면 계약을 본 계약의 일부로 한 경우 등도 중재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²⁴⁾ 이러한 ①의 경우와 ②의 서신은 다툼이 없겠으나 ②의 서신이외의 합의와 ③과 ④의 합의의 경우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 중재합의 인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북한 중재인 신분 및 중재인 선정방법상의 문제점

(1) 중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 공무원 신분의 중재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은 중재위원회 사업을 하면서²⁵⁾ 아울러 중재인이기도 하다.²⁶⁾ 북한의 중재기관은 국가기관이며 중재인은 민간인

22) 북한 중재법 제5조

23)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5조

24) 한국 중재법 제8조

25)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3조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다.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중재당사자도 넓은 범주의 국가 기관이며 중재인 또한 공무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인의 자유 심증에 의한 중재판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국가의 계획경제정책의 실현에 목적을 둔 국가차원의 정책목적에 맞는 중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북한중재의 기본법인 북한 중재법의 운영 목적에서 유추할 때 더욱 그 개연성은 높다.

(2) 편향적인 중재인 선정방법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서, 중재인수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며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는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 기간 안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⁷⁾ 두 가지 점에서 중재위원회의 의도로 편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첫째는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중재인 수나 중재인 선정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을 3인으로 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요청 시 제3국인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원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²⁸⁾

즉 중재인 선정에서 전공, 국적, 경력 등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특정 전공 그리고 제 3국인 등의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위원회의 숫자도 정하고 선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북한은 북한중재인 명부에서만 선정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중재에 있어 가장 민감한 중재인 선정이 북한 중재위원회의 의도대로 편향되게 중재인 수도 결정되고 중재인도 선정될 수 있다.

4. 중재 심리상의 문제점

(1) 고의적 중재심리 불참으로 인한 중재진행의 불가능성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당사자 모두가 중재 심리에 참석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즉, 중재 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는 중재 판정부가 정하여 중재 위원회가 심리 개시 3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²⁹⁾, 중재 심리 때는 심리개시 선언 후 신청인의 청구 사실과 피 신청인의 답변 및 상호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³⁰⁾ 중재 심리기간은 중재제기

26)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19조

27)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21조

28) 한국 중재법 제12조

29) 북한 대외경제법 제25조

문건 접수일로부터 5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³¹⁾ 그러나 일방 불출석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한국 등 대부분 국가는 일방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서증 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 절차를 계속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²⁾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방 당사자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잘못이 명백한 경우 중재 심리에 불출석함으로써 중재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2) 서면심리 미 규정

북한 대외경제 중재법에서는 서면심리 규정도 없다. 한국 등은 당사자 합의 시에는 서면심리만으로도 판정할 수 있으며³³⁾ 당사자가 심리에 불참하거나 기간 내 서증제시가 없을 경우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서면 심리하여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 중재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판정 할 수가 없다.

(3) 증거 조사 강행 규정 불명확으로 인한 증거조사 불가능성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당사자는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줄 것을 중재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증인, 감정인의 중재심리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³⁴⁾ 그리고 증거보존, 재산담보처분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제기내용을 확인하고 재판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³⁵⁾ 이 상에서 볼 때 북한 중재에서 증인, 감정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는 증거 보존 신청만을 할 수 있을 뿐, 증인을 강제 출석시켜 증거조사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한국 등 대부분 국가는 중재기관은 강제조사 권한은 없으나 법원에 협조의뢰하고 있다.³⁶⁾ 북한의 경우 국내 중재에서는 중앙중재기관이나 도중재기관이 강제성 있는 현지조사³⁷⁾, 문건이나 자료요구, 관련자 조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당사자는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³⁸⁾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한 대외 중재기관도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중재법에 의한 국내 중재기관은 중재 판정 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³⁹⁾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증거 보전신청과 중재판정 집행을 해

30)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28조

31)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31조

32) 한국 중재법 제26조.

33) 한국 중재법 제25조.

34)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29조.

35)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30조.

36) 한국 중재법 제 28조

37) 북한 중재법 제38조.

38) 북한 중재법 제39조.

당 재판기관에 집행 신청⁴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유추할 때 대외경제중재법의 중재기관은 강행적인 증거 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중재판정과 취소의 소에 대한 문제점

(1) 중재판정의 다수결 원칙 미 규정 및 중재 판정문의 중재위원회 공인 요구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문은 중재인의 서명과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3명의 중재인이 분쟁을 심리한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중재인은 판정문에 서명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재심리조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판정문은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⁴¹⁾. 그러나 한국 등 대부분 국가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기관의 공인 조항은 없다. 북한의 경우 중재 판정이 다수결 원칙인지 아닌지 명문규정이 없으며, 또한 중재 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을 받아들여 공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중재의 실효성은 확보 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중재 위원회가 공인을 지연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공인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욱 중재의 실효성은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북한 중재법의 경우 피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이거나 제3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듯이⁴²⁾ 이러한 사유가 공인거부 사유로 인정되는지도 알 수가 없다.

(2)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사유 불명확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서, 분쟁 당사자는 판정문에 대하여 잘못 내렸다고 인정하는 판정을 취소시켜 줄 것을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재판 기관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³⁾ 그런데 한국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의 법은 중재판정의 최소의 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놓고 있다.⁴⁴⁾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중재합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의하여 무능력자이거나 무효인자
- ②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변론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③ 중재합의 대상이 아니거나 벗어난 사실을 판정한 경우
- ④ 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나 본 법에 위배된 경우이다.

39) 북한 중재법 제86조.

40)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42조.

41)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38조.

42) 북한 중재법 제70조

43) 북한 중재법 제41조.

44) 한국 중재법 제36조

법원 직권 사유는

- ①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 할 수 없는 경우
- ②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된 때이다.

그러나 북한은 “잘못 내렸다고 인정하는 판정”이라고만 표현되고 있어, 잘못 내렸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애매하다. 만약 한국처럼 중재합의나 중재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판정 내용에까지 확대 해석된다면 법원 판사의 판결로 판정 내용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중재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5.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적 문제점

(1) 중재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미비

중재서류신청부터 판정 후 이행 시 까지 통신과 통행이 어려우며⁴⁵⁾ 중재신청금과 판정 금액의 송금, 대체품 선적 등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여 현 상태에서는 중재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운 설정이다.

(2) 북한의 사법부 활용을 위한 협정 미비

중재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증거보전, 집행 판결 신청 등 조치를 북한 법원 등에 신청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양측 간의 합의가 없어 이를 실행하기가 어렵다.

IV.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중재절차 등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선행

북한에서 중재신청부터 판정 집행까지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없이는 중재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가 사법 공조 협약 등으로 상호간의 법원 이용의 길이 열려야 한다. 중재지는 관행상 피 신청인 국가에서 이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북한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국 측이 보통 신청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 증거보전, 재산보전, 그리고 집행 판결 신청과 같은 북한 법원 이용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재로서 한국

45) 한국무역협회, “06년 남북교역 전망 및 애로조사”, p.18.

당사자가 북한 법원에 이러한 것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북한 당사자도 한국 법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중재신청, 심리참석 등을 위한 상호 왕래와 통신의 보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인이 북한에 입북 하는 것과 통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중재신청이나 심리참석에 입북허가가 거절되고 연락도 할 수 없다면 중재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중재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입북 하는 것과 연락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즉각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중재절차를 원만히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3. 송금과 물품이동 등의 보장

중재신청금 예납, 중재판정금액 송금, 대체 선적이나 현물 보상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중재가 중재절차 진행이나 중재 판정 이행불능으로 중재 판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4. 북한 대외경제주체의 독자성과 독립성 인정

현행 북한의 경제주체는 국가 중심의 계획 경제로서 본사와 지사 같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실제로는 하나의 국가의 경제 주체이다. 국내 중재는 감독과 조정적인 기능이며, 대외 중재는 중재기관, 중재인, 중재당사자등이 전부 국가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정한 중재는 기대할 수가 없다.

5. 중재합의의 구체적인 방식 보완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는 일부분쟁 중재합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서면 중재합의로 인정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면 중재합의에 대한 시비를 없애야 하겠다. 즉 북한대외경제중재법에서 서면 중재합의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계약서중의 중재조항과 분쟁 발생 후의 중재계약이어서 이외의 경우에는 중재합의로 인정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국 중재법상의 중재합의로 간주되는 네 가지 경우를 중재합의로 인정하는 법상의 보완이 요망된다.

6. 중재인 자격제한과 중재인 선임 방법의 개선

북한중재기관의 위원은 중재사무국으로서 역할만 하고 중재인이 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한 것도 폐지하고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수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인 중재로 하여 1인중재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인 선정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제3국인을 원하면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당사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 의사보다 중재기관의 의도대로 중재인 관계사항이 결정된다면 중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7. 일방 당사자 궤석 심리와 서면 심리의 인정

중재 신청 후 혹은 심리 진행 중에 불리한 당사자는 답변서 제출을 기피하거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중재 진행 참여를 기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행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으로는 중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고의적 기피를 막기 위해서는 적법한 통지를 하였음에도 심리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일방참석만으로도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고 제출된 서류나 증거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일본 등의 중재법을 북한대외경제중재법에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다.

8. 법원의 증거조사 협조 규정 보완

현행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법원협조사항으로 증거보존을 규정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협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재법과 같이 공권력이 있어야만 증거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조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정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9. 중재판정의 중재인 다수결 원칙 보완 및 종결성 보장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중재판정은 중재의 다수결 원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중재판정문도 중재위원회가 판정문을 공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경우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판정문을 공인한때 다수결 원칙이 배제되고 소수의견을 받아 들여 중재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판정문이 효력이 발생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등과 다수결 원칙을 선언하고 중재위원회가 판정문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공인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중재

는 중재인이 한다는 원칙을 살려야 하겠다.

10.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 명확한 규정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취소의 사유를 “잘못 내렸다고 인정되는 판정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잘못 내린 판정을 중재인의 판정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중재결과는 다시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의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등과 같이 중재합의와 관련된 당사자 부적격과 합의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판정, 절차 진행 잘못 등에 한정되는 사유에 한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여야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일과 북한이나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양측의 경제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한 경제 협력 등 각 분야의 통일이 전체 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현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서로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 장치가 없이는 안정된 투자와 거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그 일환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북한 중재 관련법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 간의 경제 관련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상에서 검토한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중요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법원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법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왕래와 통신이 보장되어야 하고, 송금과 물품 이동이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 주체인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단위별로 재산 처분이 자유로운 사업 및 재산운영관리의 독자성과 독립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독자적인 재산 처분이 가능

하게 되어 중재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중재합의 다툼을 없애기 위하여 일부 분쟁 중재합의 규정과 서면 중재합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상에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 중재위원회 위원 등은 공정하게 중재 위원회 관리만 하고 중재인은 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북한 중재 위원회 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중재인 수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3인 중재인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일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3국인 중재인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협조를 통하여 당사자가 요구하는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방 당사자의 고의적인 해태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 일방 당사자 궤석 심리와 서면심리를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공권력이 요구되는 증거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증거조사 협조 규정이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에 보완되어야 한다.

일곱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상에 전원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 원칙 중재판정의 인정이 규정되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월권을 방지하고 중재판정부의 중재 판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문 공인제도는 삭제되어야 한다.

여덟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상의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인 “잘못 내려졌다고 인정되는 판정문”은 중재인의 판정내용까지 포함되어 중재의 무용론까지 대두 될 수 있는바, 중재합의 적법성, 절차진행의 잘못 등으로 한정하는 법의 보완이 요망된다.

상기한 개선사항 이외에도 정치 환경의 변화 등 많은 사안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중재의 진행과 집행에 대해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한 간의 협의과정에서 본 논문이 남북중재의 실행 가능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주요한 정책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더욱 진전된 연구를 약속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참 고 문 헌

- 김석철,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 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12. pp.31-56
- 김연철, “북한경제정책변화의 의미와 전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2, 9.
- 리 황, 「중재법학」,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1. p.34
- 리 황, 「중재법학」,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1. p.37
-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4권, 북한법연구회,

2001

-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p.38
- 신군재·이주원, “남북한 및 중국중재제도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7, p.102
- 최석범, “북한중재법의 주요특징과 시사점”, 「중재연구」 제 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12. p.63
- 한국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통일사법정책자료 95-IV, 1995
- 한국무역협회, “06년 남북교역전망 및 애로사항조사”, 2006. 2
- 한국무역협회, 대북무역통계자료, 2007.
- KDI, 「북한경제리뷰」 2008. 1. 18.
- 한국중재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 북한중재법
- 북한대외경제중재법
- 미합중국중재법
- 일본중재법
- 중국중재법
- UNCITRAL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

ABSTRACT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Suk-Chul Kim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Korea. In order to reach a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before 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will be followed by the entir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chanism that could peacefully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actual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will secure stable investments and trades.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 conflict solv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 is a very important subject, and the basi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the arbitration law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laws on foreign economy i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 systematical solution to economic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uridical cooperation system for both South and North courts of justice needs to be set up to smoothly carry out the main procedures. Mutual correspondence and telecommunication needs to be guaranteed, also remittance and the movement of goods shall precede.

Second, the free liquidation of businesses by unit and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management of wealth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bodies,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shall precede to independently liquidate wealth and thus make arbitration possible.

Third, amendments in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shall be made to some parts of regul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s to avoid conflicts regarding arbitration agreement.

Fourth, th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impartially manage

the committee only without taking the role of arbitrator, and the clause that allows the North Korean committee to nominate the arbitrator shall be erased. In case an agreement regarding the number of arbitrators is not reached, the three arbitrators general rule shall be applied. In case of requests from any of the parties, a third country arbitrator nomination shall be guaranteed. Also, the requested arbitrator by the party shall be nomina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urt.

Fifth, the trial in case of non-appearance or written trial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in to prevent intended negligence or evasion.

Sixth, regulations regarding the court's investigation of evidence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to make fair arbitration possible in case that government power is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evidence.

Seventh, provisions regarding majority decision shall be added in the North Korean law in the impossibility of unanimous decisions, and the certified system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ficial text shall be erased to prevent arrogation and assure the power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ion government.

Eighth, as "the wrong decision approved" reason for cancellation of arbitration in the North Korean law includes the content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or could lead to uselessness of arbitration, amendment will be necessary to limit it to legitimac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wrong procedures.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of important use in understanding the issues on the workability and the solutions to the South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that could be presented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 North Korea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Efficiency,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Certification of Arbitration Decisions, Mutual Cooperation on Justice Administration